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4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수를 지정할 때 고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하였으며,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안 제3조의

3),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호수의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정비하였으며,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안 제8조)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 정기 또는 수시점검에 대하여 기간에 대한 규정없이 없던 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안 제10조)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